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4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 14) 상정
-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윤 인 상)

□ 제안이유

- 시민의 권리회복 및 법률구제 요구의 확산으로 소송의 다양성과 소송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화된 전문변호사를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을 변호사에서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함(안 제2조제1항)
- 나.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을 세분화 함(안 별표 1 및 별표 2)

3. 질의 및 답변요지 : 속기록 참고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radio"/>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촉·해촉) ① 시장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 정원의 조정 또는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3조제1항 중 “시장(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를 “시장(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수행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를 “시장(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시장(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고
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건의 비용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임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별지”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착수금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청 구 시 구 비 서 류	
	내 용	착 수 금		
민 사 소 송	1. 신청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청구서 · 소가증명원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105만원 이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기준)		·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소송물가액 중 시에 청구하는 부분 및 시가 당사자인 부분)
	3.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50퍼센트 범위 이내
행 정 소 송	1. 신청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청구서 · 소가증명원 	
	2. 본안사건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민사소송에 준함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 기준)		· 민사소송에 준함
	3. 환송심			· 민사소송에 준함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청 구 시 구 비 서 류
<p>가. <u>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며, 각 심급별로 사례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u></p> <p>나. 심급별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p> <p>다. 청구의 포기, 인락,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라. <u>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입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사건확정증명원 · 판결서,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3. 그 밖의 비용

구 분	지 급 기 준	청 구 시 구 비 서 류
그 밖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송달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검증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감정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증인여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그 밖의 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인지·송달료 등 납입영수증 ·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사본 각 1부

[별표 2]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제4조 관련)

소송물가액	보수기준액	소송물가액	보수기준액
200만원 미만	18만원	2,600만원 이상	129만원
200만원 이상	19만원	2,700만원 이상	133만원
300만원 이상	27만원	2,800만원 이상	137만원
400만원 이상	34만원	2,900만원 이상	141만원
500만원 이상	40만원	3,000만원 이상	145만원
600만원 이상	45만원	3,100만원 이상	148만원
700만원 이상	50만원	3,200만원 이상	151만원
800만원 이상	55만원	3,300만원 이상	154만원
900만원 이상	60만원	3,400만원 이상	157만원
1,000만원 이상	65만원	3,500만원 이상	160만원
1,100만원 이상	69만원	3,600만원 이상	163만원
1,200만원 이상	73만원	3,700만원 이상	166만원
1,300만원 이상	77만원	3,800만원 이상	169만원
1,400만원 이상	81만원	3,900만원 이상	172만원
1,500만원 이상	85만원	4,000만원 이상	175만원
1,600만원 이상	89만원	4,100만원 이상	178만원
1,700만원 이상	93만원	4,200만원 이상	181만원
1,800만원 이상	97만원	4,300만원 이상	184만원
1,900만원 이상	101만원	4,400만원 이상	187만원
2,000만원 이상	105만원	4,500만원 이상	190만원
2,100만원 이상	109만원	4,600만원 이상	193만원
2,200만원 이상	113만원	4,700만원 이상	196만원
2,300만원 이상	117만원	4,800만원 이상	199만원
2,400만원 이상	121만원	4,900만원 이상	202만원
2,500만원 이상	125만원	5,000만원 이상	205만원

소송물가액	보수기준액	소송물가액	보수기준액
5,100만원 이상	206만원	7,800만원 이상	233만원
5,200만원 이상	207만원	7,900만원 이상	234만원
5,300만원 이상	208만원	8,000만원 이상	235만원
5,400만원 이상	209만원	8,100만원 이상	236만원
5,500만원 이상	210만원	8,200만원 이상	237만원
5,600만원 이상	211만원	8,300만원 이상	238만원
5,700만원 이상	212만원	8,400만원 이상	239만원
5,800만원 이상	213만원	8,500만원 이상	240만원
5,900만원 이상	214만원	8,600만원 이상	241만원
6,000만원 이상	215만원	8,700만원 이상	242만원
6,100만원 이상	216만원	8,800만원 이상	243만원
6,200만원 이상	217만원	8,900만원 이상	244만원
6,300만원 이상	218만원	9,000만원 이상	245만원
6,400만원 이상	219만원	9,100만원 이상	246만원
6,500만원 이상	220만원	9,200만원 이상	247만원
6,600만원 이상	221만원	9,300만원 이상	248만원
6,700만원 이상	222만원	9,400만원 이상	249만원
6,800만원 이상	223만원	9,500만원 이상	250만원
6,900만원 이상	224만원	9,600만원 이상	251만원
7,000만원 이상	225만원	9,700만원 이상	252만원
7,100만원 이상	226만원	9,800만원 이상	253만원
7,200만원 이상	227만원	9,900만원 이상	254만원
7,300만원 이상	228만원	1억원 이상	255만원
7,400만원 이상	229만원	2억원 이상	305만원
7,500만원 이상	230만원	3억원 이상	355만원
7,600만원 이상	231만원	4억원 이상	405만원
7,700만원 이상	232만원	5억원 이상	455만원